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를 매월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
-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(OTT 등)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
 - 종합유선·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‘매월’에서 ‘매반기’로 변경
 -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% 이상에서 70% 이상으로 완화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4항제1호나목 중 “매월”을 “매반기”로 하고 다목 중 “매월”을 “매반기”로 “100분의 80”을 “100분의 70”으로 한다. 같은 항 제1호 중 “매월”을 “매반기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0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 1.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.(생략) 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: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. 방송채널사용사업자 :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80</u> 이상 2.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이상 편성할 것 ⑤ ~ ⑧ (생략)	제50조(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매반기----- ----- 다. ----- -----매반기----- ----- <u>100분의 70</u> ----- 2. ----- -----매반기----- ----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-6523